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정통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 기초자료 통계 추가〉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79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정통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 기초자료 통계 추가 (안 제17조제1항제2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지원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5. 3. 19.

다. 회 부 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II. 검토의견

1. 지정통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 기초자료 통계 추가 (안 제17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 지정통계의 지정 -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책수립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 ·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 <u>지역발전</u>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 그 밖에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	○ 지정통계의 지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지역발전 및 지방소멸대응</u>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¹⁾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하며, 2025년 6월말 기준 통계작성기관은 총 437개임.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통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다른 통계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등을 열거하고 있음.²⁾

개정안은 지정통계 대상에 지역발전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 외에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를 추가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 승인통계가 지정통계로 지정³⁾되면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2)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승인통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를 말함. 2025년 6월말 기준 국가 승인통계는 1,360종이며, 이 중 지정통계는 총 93종임. [참고: 지정통계현황] 참조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지역발전에 지방소멸대응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제도 운영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멸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정안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수용한다는 의견임.

개정안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과 관련한 통계가 지정통계로 지정되면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보다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방소멸대응’이 개념적으로 ‘지역발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면 관련 통계가 지정통계로 추가 지정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생략) 2. <u>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u> 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지역발전 및 지방소멸대응</u> ----- -----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

참고

지정통계 현황(자료: 기획재정부)

구분	통계분야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방법	작성주기
1	소득·소비·자산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조사	1년
2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분기
3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조사	1년
4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조사	1년
5	경제일반·경기 / 기업경영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조사	1년
6		경제총조사	통계청	조사	5년
7		설비투자계획조사	한국산업은행	조사	1년
8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1년
9		기업활동조사	통계청	조사	1년
10	물가	생산자물가조사	한국은행	조사	월
11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조사	월
12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통계청	조사	분기
13		수출입물가조사	한국은행	조사	월
14	임금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	조사	반기
15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노동부	조사	1년
16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반기
17	국민계정	자금순환표	한국은행	가공	분기
18		국민계정	한국은행	가공	분기
19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가공	1년
20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청	가공	1년
21		지역소득	통계청	가공	1년
22	정부·재정	공무원총조사	인사혁신처	조사	5년
23	금융 / 무역·국제수지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보고	월
24		국제수지통계	한국은행	가공	월
25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국무조정실	보고	1년
26		국제투자대조표(IIP)	한국은행	가공	분기
27		대외채무및대외채권	한국은행	가공	분기
28	광업·제조업	철강통계조사	한국철강협회	조사	월
29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월
30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조사	1년
31	건설 / 교통·물류	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월
32		건설업조사	통계청	조사	1년
33		운수업조사	통계청	조사	1년
34		국가교통조사	국토교통부	조사	5년

구분	통계분야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방법	작성주기
35	도소매·서비스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월
36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월
37		서비스업조사	통계청	조사	1년
38	주거 / 국토이용	주택총조사	통계청	가공	1년
39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조사	월
40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한국부동산원	조사	월
41	농림 / 수산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청	조사	1년
42		농업면적조사	통계청	조사	1년
43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보고	5년
44		농작물생산조사	통계청	조사	1년
45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조사	1년
46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조사	5년
47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분기
48		수산물가공업통계	해양수산부	보고	1년
49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월
50	에너지	에너지총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3년
51	인구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보고	월
52		인구총조사	통계청	가공	1년
5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월
54	사회일반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조사	5년
55		사회조사	통계청	조사	1년
56	노동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조사	1년
57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조사	월
58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조사	반기
59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통계청	조사	1년
60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조사	반기
61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조사	월
62	환경	상수도통계	환경부	보고	1년
63		하수도통계	환경부	보고	1년
64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	조사	5년
65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환경부	보고	1년
66	보건 / 복지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가공	1년
67		가족과출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3년
68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조사	1년
69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조사	3년
70		연금통계	통계청	가공	1년
71	교육·훈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통계청	조사	1년
72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보고	반기

구분	통계분야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방법	작성주기
73	과학·기술 / 정보통신	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1년
74		기업정보화통계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1년
7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1년
76		ICT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1년
77	지역통계	충청남도사업체조사	충남	조사	1년
78		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	부산	조사	1년
79		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서울	조사	1년
80		전북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전북	조사	1년
81		울산광역시사업체조사	울산	조사	1년
82		경기도사업체조사	경기도	조사	1년
83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제주	조사	1년
84		충청북도사업체조사	충북	조사	1년
85		경상남도사업체조사	경남	조사	1년
86		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인천	조사	1년
87		세종특별자치시사업체조사	세종	조사	1년
88		전라남도사업체조사	전남	조사	1년
89		강원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강원	조사	1년
90		대구광역시사업체조사	대구	조사	1년
91		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	대전	조사	1년
92		광주광역시사업체조사	광주	조사	1년
93		경상북도사업체조사	경북	조사	1년